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문성훈** · 임동원***

<요 약>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세율 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새롭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수평적 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등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제어〉 주식투자과세, 경제적 이중과세, 조세중립성, 이원적소득세제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또한 본 논문은 위 지원사업의 워킹페이퍼 모음집인 2018 조세전문가 네트워크(홍범교·문성훈·임동원·성명재·전승훈, 2018,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Ⅱ장의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확장·발전시킨 것으로서,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

이 논문은 2019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1909-01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mooncta@hallym.ac.kr, 주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fresh911@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9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9일

I. 서 론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은행 예금금리가 연 10%에서 1%대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변화가 없었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0.3%라는 세율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며, KOSPI, KOSDAQ, 비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¹⁾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 확대와 증시침체와 맞물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이탈 등 금융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상장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고, 증시침체로 인한 투자손실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되고 있다는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확대관련 법안의 발의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과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김철민의원(2018.3.), 김병욱의원(2018.11.)은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조경태의원(2018.11.), 최운열의원(2018.12.), 추경호의원(2019.7.)은 증권거래세의 일시 또는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증권거래세 개선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최운열의원은 제출법안에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채권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와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단계적 인상 등을 담은 증권투자과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올해 6월부터 KOSPI와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하하였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중장기적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자본시장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고 2019년 세법개정안(2019.7.)에 포함되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증권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식투자과세에 대한 국제적 추이를 볼 때, 1990년대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았고 2000년대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전반을 개편하고

1)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걸쳐 완화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차례가 걸쳐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도 2016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에서 20%, 2018년 1년 이상 보유주식 세율도 20%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20~25%로 인상되었다.

있다.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함과 동시에 주식투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의 범위를 넓히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주식투자과세 관련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금융소득 관련하여 홍범교·이상엽(2013)은 그간 논의를 정리하고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금융세제를 일관성있게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오운·문성훈(2015)은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자본소득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분석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과세를 포괄화·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거래과세 관련해서 홍범교·이상엽(2012)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세수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금융거래세를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금융소득이라는 큰 틀에서 소득과세체계를 분석하거나, 금융거래세라는 넓은 범주의 개념에 따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주식투자라는 특정 범주를 설정하고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최근 금융거래세를 상장기업의 주식에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식투자에 대한 대표적 과세제도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적 추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제언하려 한다. 제Ⅱ장에서 현행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주식투자과세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 사례(일본, 스웨덴)를 입법례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프랑스 등)의 사례도 검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현행 주식투자과세제도에 대한 논의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행 주식투자 관련 과세

금융자산²⁾과 관련된 조세는 크게 금융자산소득 과세(소득세)와 금융자산거래 과세(거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거래’란 금융자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 거래를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산거래 중 주식(유가증권)의 거래를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현행 주식투자시 과세제도는 크게 주식의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로 나뉜다.

1. 주식양도소득세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³⁾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상장

2)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란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을 의미한다.

법인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 소득세법상 열거된 경우에 과세되므로, 소액주주의 상장법인주식만 비과세되고 있다.⁴⁾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고,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비율이 1%(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코넥스 시장 10억원)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를 말하는데 2021년까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표 1〉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황

구 분	현 행		2020. 4. 1. 이후		2021. 4. 1. 이후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KOSPI	15억원 이상	1% 이상	10억원 이상	1% 이상	3억원 이상	1% 이상
KOSDAQ	15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2% 이상	3억원 이상	2% 이상
KONEX	10억원 이상, 4% 이상				3억원 이상	4% 이상
비상장 주식	15억원 이상	4% 이상	10억원 이상	4% 이상	3억원 이상	4% 이상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67조의8.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 나머지 대주주의 주식은 20~25%이고,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나머지 소액주주의 주식은 20%이다.⁵⁾

〈표 2〉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거래	장내거래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대기업	30%	25%	20%	비과세	30%	20%	20%
중소기업	30%	25%	10%	비과세	20%	20%	10%

*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1978년 부동산주식과 최대주주의 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한 것에 연원하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2012년 이후 상장주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부터 주식지수관련 파생금융상품(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 4)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상 열거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한편,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부과된다. 대주주나 장외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해외주식의 연간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식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는다.⁶⁾

양도소득세 전체 현황을 보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2017년 기준 약 16조 6,698 억원으로 전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 중 21.1%를 차지하고 있다. 비과세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의 양도소득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자산종류별, 2017년)

구 분	자산건수	양도소득 (백만원)
토지	569,305	32,571,254
건물	343,918	27,201,568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7,501	2,582,900
주식	33,049	16,669,868
기타자산	2,677	150,944
총 계	1,056,450	79,176,534

* 출처 : 2018 국세통계연보, 5-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Ⅲ.

양도소득세의 장점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장기투자를 통한 금융시장 육성(동결효과), 국제적 정합성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세수변동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징세비용 부담 등이 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은 1934년 일반소득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과세되었으며, 종합과세 대상이다. 과세초기에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었으나 1993년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 보유자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⁷⁾ 금융소득(이자소득 포함)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⁸⁾ 한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6)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와 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을 공제할 예정이다.

7) 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한다(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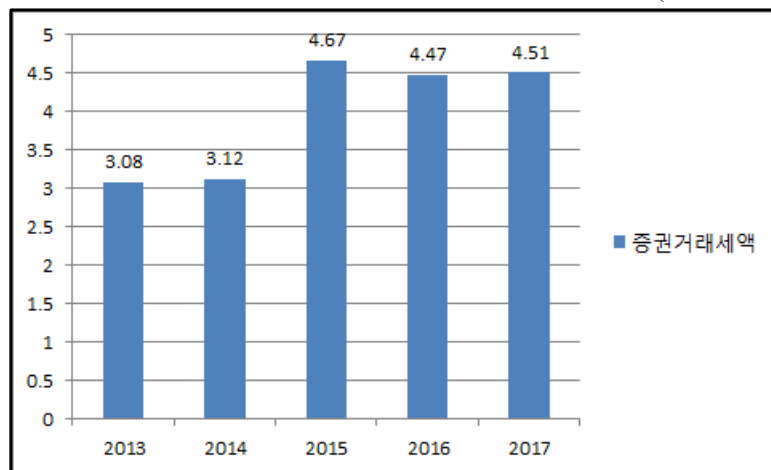
8) 소득세법 제62조.

3.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되었으며,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폐지되었다가 1979년 자본시장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고⁹⁾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재도입되었다.¹⁰⁾ 2017년 증권거래세 수는 4조 5,083억원인데, 이는 2015년 역대 최고치인 4조 6,698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17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4.5조원)와 증권거래세 관련 농어촌특별세(1.8조원)를 합치면 총 6.3조 원으로 국세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 되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투기거래 방지라는 도입 목적보다 세수 증대라는 목적에 더 부합하는 세제로 보인다.

〈그림 1〉 증권거래세수 추이

(단위 : 조원)



* 출처 : 국세통계연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과세한다.¹¹⁾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액주주·대주주 구별 없이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0.5%의 세율로 과세한다(비상장주식 등 기타의 경우). 자본시장육성을 위해 KOSPI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2019년 5월 이전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0.1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추가로 부과(총 0.3%)하고, 코스닥시장 등(KOSDAQ, KONEX, K-OTC)에서 거래되는 경우 0.3%의 세율로 과세하였다.¹²⁾

9) 1978년 증권거래세법 제정이유에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이라고 명시하여 투기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7조.

12) 증권거래세법 제8조.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KOSPI와 코스닥, K-OTC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p 인하하여 현재는 0.25%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코넥스는 0.2%p 인하되어 0.1%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¹³⁾

개인 간에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¹⁴⁾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와 증권시장 외에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의 장점은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안정 도모,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없는 과세, 징세 용이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시장효율성 저하, 자금의 해외유출 확대 등이 있다.

III. 국제적 동향과 해외 사례

1. 국제적 동향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소득(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자본이득세로 분류하여 상대적인 저율로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최근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금융소득과세에 있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하여 금융소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원적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 이래 각국의 자본소득과세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OECD, 2006).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소득세 제도를 포괄화·단순화하고, 조세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며(중립적), 국가 간 조세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세제의 포괄화·단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소득구분 없이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그 순소득금액에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단일세율과세제도와 소득을 자본소득(capital income)과 근로소득(labor income)으로 양분하여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과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다(오윤·문성훈, 2015). 단일세율제도는 체제전환국가(동구권)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원적 소득세제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되어¹⁵⁾ 독일·영국 등 서유럽국가로 확

13)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에서 0.05%p 인하하여 0.45%로 과세될 예정이다.

14) 증권거래세법 제3조.

15) 이원적 소득세제는 80년대말 90년대 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산되었고, 일본에도 도입되었다. 유럽과 일본의 이원적 소득세제화는 2007년부터 2009년의 기간에 추진되었다.

〈표 4〉 각국의 주식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비교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세율	• 장기소득 (분리과세) – 0, 15, 20% • 단기소득 (종합과세) – 0~37%	10, 20% (분리과세)	26.375%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0% • 종합과세 – 17.2~62.2%	20% (분리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지	×	×	△ (단, 모든 소득의 종합과세 소득세율 25% 이하인 소득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배당소득만 가능)

* 출처 :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主要國の株式譲渡益課税の概要”.

증권거래세는 주로 단기 투기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세되었는데,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199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국가가 폐지하였다.¹⁶⁾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주장되었고, 2013년 2월 EU 재무장관들은 독일,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들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승인하였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이 반대하였고 유럽중앙은행도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금융연구원, 2013), 실제 시행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몇 개국에서만 이뤄졌다.

16) 미국 1965년 폐지, 스웨덴 1991년 폐지, 독일 1991년 폐지 등.

〈표 5〉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국내외 현황

국 가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한 국	○ (0.3%)	○
미 국	×	○
일 본	×	○
영 국	△ (0.5%) ¹⁾	○
프랑스	○ (0.3%)	○
독 일	×	○
룩셈부르크	×	○
중 국	○ (0.1%)	×
대 만	○ (0.15%)	○
홍 콩	○ (0.1%)	×
태 국	○ (0.1%)	×
싱가포르	○ (0.2%)	×

주 1) 영국은 증권의 등록시 매수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함.

* 출처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2. 일본, 스웨덴의 증권거래세 폐지 및 전환 사례

가. 일본

일본은 10년간 전환기를 거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대체하였다. 1953년 증권거래세를 처음 도입하였고, 1988년 증권거래세율을 인하(0.55% → 0.3%)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여 1998년까지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병존하였다. 1998년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인하하였고,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였다.¹⁷⁾

일본의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와 상호대체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1953년 증권거래세가 도입된 것은 양도소득세를 대체하려는 목적이었고,¹⁸⁾ 1999년 일본식 금융개혁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의 일체화 차원에서 자본이득과세의 신고분리과세화

17) 세제개정요강에 따르면 “유가증권거래세 및 거래소세에 대해서는 1999년까지 금융시스템개혁의 진전 상황,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되, 주식등 양도차익과세의 적정화와 병행하여 폐지한다”라고 했다.

18) 당시 양도차익 계산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소득세를 포기하였다.

(20% 세율)를 추진한 것이다(오윤·임동원, 2013). 이 개혁은 일본의 금융시장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세계화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구미 시장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 고, 1997년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였다(Dick K. Nanto, 2000).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1988~2005년 기간을 거래세기간과 병존기간, 그리고 양도세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병존기간의 세부담(0.5~1%)은 거래세 (0.6%)나 양도세(0.3~0.5%) 단독 기간보다 약 2배 수준이며, 양도세 단독 기간의 세부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단독 부과될 경우 증권거래세가 단독 부과되는 경우보다 조금 낮게 세부담이 발생하였다. 세수 현황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되더라도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결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병존한 기간에는 세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주식시장도 위축되었으며, 병존기간 에는 주식 거래액도 크게 감소하였는데,¹⁹⁾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자 거래액이 증가하였다.

〈표 6〉 일본의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세부담 변동

(단위 : 10억엔)

구 분		거래액 (A)	주식양도소득세 (B)	증권거래세 (C)	세수 합계 (D=B+C)	D / A
거래세	1988	332,757	0	2,123	2,123	0.64%
	1989	386,395	1,146	1,233	2,379	0.62%
	1990	231,837	1,374	748	2,122	0.92%
	1991	134,159	923	443	1,366	1.02%
	~					
	1996	136,169	638	391	1,029	0.76%
	1997	151,445	475	403	878	0.58%
	1998	124,101	408	172	580	0.47%
양도세	1999	210,236	926		926	0.44%
	2000	290,325	929		929	0.32%
	2001	225,238	629		629	0.28%
	2002	209,229	523		523	0.25%
	2003	255,342	936		936	0.37%
	2004	357,286	1,452		1,452	0.41%
	2005	535,118	2,906		2,906	0.54%

* 출처 : Fact Book 2010(Japa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2010.9.22.)

19) 병존 기간은 금융시장의 자유화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국내시장이 자유화되면서 국외자본유출이 용이해진 여건 하에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자 국외자본유출이 심화되었다.

나.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수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84년 거래소 내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로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는데, 예상보다 증권거래세수가 적은 것을 이유로 1986년에는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였다. 1991년 말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었으며, 소득과세체계가 이원적 소득과세체계²⁰⁾로 전환되었다.

증권거래세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적었고,²¹⁾ 두 번째, 자본의 국외이탈도 심각했다. 1986년 증권거래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 후,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30%가 해외(런던거래소)로 이동하였고, 1990년에는 전체 물량의 50%가 런던으로 이동하였다(S.R. Umlauf, 1993). 결국, 증권거래세의 도입으로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이에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졌지만,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91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자 점차 모든 부문에서 자산 또는 거래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소득과세의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은 국내총생산의 약 2.7%에 해당하는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Shigeki MORINOBU, 2004).

〈표 7〉 스웨덴의 증권거래세수 변화와 국외거래

(단위 : %)

구 분	GDP 대비 증권거래세수 비중	스웨덴 주식의 런던거래 비중
1984 (증권거래세 도입)	0.10	—
1985	0.13	—
1986 (세율 2배 인상)	0.26	—
1987	0.35	30
1988	0.34	48
1989	0.45	51
1990	0.43	52
1991 (증권거래세 폐지)	0.25	—

* 출처 : Stephan Schulmeister, Margit Schratzenstaller, Oliver Picek, A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 —Motives, Revenues, Feasibility and Effects, WIFO, 2008.3, p.22, 수정.

20) 이원적 소득과세체계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체제이다.

21) 세수가 연평균 15억 크로네 정도 예상되었지만 실제 연평균 5천만 크로네 수준에 그쳤다.

3. 프랑스 등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사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강화, 조세 부과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9년 프랑스와 독일이 토빈세²²⁾ 도입을 주장하였다. 2011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이사회 제안서”²³⁾를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방안을 EU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제안된 금융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금융상품이고, 세율은 주식, 채권 및 외환거래 0.1%, 파생상품 0.01%이며, 금융기관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²⁴⁾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따르면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300~350억 유로(도입 추진 11개국 세입의 1%) 상당의 세수 확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도입으로 증권거래와 파생상품 거래가 각각 20%와 9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²⁵⁾

2013년 2월 EU 재무장관들은 독일, 프랑스 등 11개 회원국들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고,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모든 27개 EU 회원국이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되었으나,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²⁶⁾의 반대로 11개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만 먼저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EU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국가는 11개 국가에서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10개국이다.²⁷⁾²⁸⁾ 에스토니아는 2015년 12월 금융거래세가 세수 측면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융기관의 반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금융거래세 도입 절차를 중단하였다. 주요 추진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 도입을 연기하고 있다.

2012년 8월 프랑스는 수정재정법안 제5조에 따라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²⁹⁾ 프랑스는 10억 유로를 넘는 상장기업의 주식 매입에 0.2%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2017년 세율을 0.3%로 인상하

22)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외환거래에 대하여 0.1%에서 0.5%정도의 낮은 일정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Tobin이 1972년에 주장한 세제이다 (박은태, 2011).

23)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system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24) 세 부담 증가, 금융경쟁력의 손실, 금융기관 이전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세율 제안.

25)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분을 금융위기의 대응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거래의 감소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영국 등은 금융시장 위축 및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 반대했다(European Commission, 2011.9.28.).

26) 영국, 룩셈부르크, 체코, 몰타 등 4개국이 반대하였고, 12개 국가는 유보하였다.

27)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Letter from Mr Sven Sester, Minister of Finance, Republic of Estonia”. 2016.4.12.

28) 이탈리아는 2013년 3월 도입을 결정하자 주식거래량이 38%나 감소하였다.

29) Article 5 of the French Amended Finance Bill of 14 March 2012.

였다. 도입 초기인 2012년 8~11월간 2억 유로의 금융거래세 세수를 거두어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11억 유로의 금융거래세 세수로 확대되어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프랑스 금융거래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결과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으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차이(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가격차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변동성에 관해서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금융거래세는 금융시장의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며, 금융거래세가 투기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시장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Gunther Capelle-Blancard · Olena Havrylchyk, 2013).

4. 시사점

주식투자과세에 관한 국제적 흐름은 1990년대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았고, 2000년대에는 자본이득세제(주식양도소득세)를 개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

각 국의 세제는 자본이득 포괄화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금융투자세제는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증권거래세 당초 도입목적은 완전하지 않은 자본이득과세를 보완하면서도 간접세로서 투기억제 등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인데, 자본이득과세가 전면화 및 포괄화되면서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이 약해진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의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식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점과 10년간의 전환기를 두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인 점은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였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국가가 있다. 프랑스의 사례로 볼 때 금융거래세는 세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Gunther Capelle-Blancard · Olena Havrylchyk, 2013).

IV. 주요 논의 및 평가

주식투자과세제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증권거래세의 담세능력, 이중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확

대의 체계적 정합성, 중장기적 방향 등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1. 증권거래세의 담세능력

증권거래세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즉 증권거래세의 담세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제도는 소득(소득세 등) 뿐만 아니라, 소비(부가가치세 등), 재산(증여세 등)도 주요한 담세력이 있는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증권거래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이전을 담세력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세는 권리의 취득·이전을 비롯한 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실적이거나 법률적 행위에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담세능력을 일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소득, 소비, 재산 등보다 담세력이 약하고 간접적인 주식의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담세능력은 낮은 편이다. 주식투자자들이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를 거래비용의 일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는 점도 증권거래세의 담세능력이 낮은 것을 반증한다.

2. 주식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주식투자(주식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로서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부분이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 또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과세는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중과세³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증권거래세의 과세목적이 투기적거래 규제이고 과세대상은 거래금액 전체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목적³¹⁾과 과세대상이 달라 법률적 이중과세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과세목적, 과세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법률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³²⁾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담의

30) 법률적 이중과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이고, 경제적 이중과세는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의 동일 과세기간 내의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행사되는 경우를 말한다(박민, 1999).

31) 주식양도소득세는 자산소득의 과세강화로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득세법(시행 1991.1.1., 법률 제4281호) 제정·개정이유].

32)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중복되는 과세대상에 대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고, 그 과세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중과세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결정).

본질 내지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이 다르고, 이에 따라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등이 다르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³³⁾

그러나, 동일 납세의무자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법률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적인 속성이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 직접세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증권거래세 부담이 매수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세제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함으로써 주식거래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³⁴⁾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일부금액이 함께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차감할 경우 증권거래세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율)만큼만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는 것에 불과하며, 증권거래세×(1-양도소득세율)만큼은 여전히 과세된다.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21년 이후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까지 낮아지면, 특수관계인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대상자만 2018년 기준(8천명)의 9.3배 수준(7.5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2018년 대주주 주식보유현황

(단위 : 명, 조원)

구분	25억원, 20억원		15억원 이상		10억원		3억원	
	인원수	보유액 ¹⁾	인원수	보유액	인원수	보유액	인원수	보유액
코스피	3,988	292.3	6,588	298.0	10,226	303.1	44,676	322.8
코스닥	4,149	59.0	5,343	60.9	8,108	64.0	30,810	75.1
합계	8,137	351.3	11,931	358.9	18,334	367.1	75,486	397.9

주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만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유액으로 대체함.

* 출처 : 금융투자협회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시장과 뚜렷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증권거래세율과 비교할 때 높으므로 과잉적인 성격이 있다. 주변국 증권거래세율을 살펴보면, 홍콩 0.1%, 중국 0.1%, 싱가포르 0.2%, 대만 0.15%(2017년 50% 인하)이며, 일본은 비과세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유인을 감소시키

33) 헌재 2016.3.31. 선고 2013헌바372 결정 등.

34)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다른 세목으로 과세할 때 하나의 세목으로 부과된 세액을 다른 세목의 세액을 산출할 때 공제를 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등).

며, 글로벌 증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경우, 국내 증시의 침체와 거래세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투자자는 부담하는 거래비용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증권거래수수료는 IT 발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20년 이상 동일수준(0.3%)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매매수수료율은 0.0792% 수준으로 2010년 매매수수료율(0.1184%) 대비 0.0392%p 감소되었으나, 증권거래세율(0.3%)은 매매수수료율(0.0792%)의 약 4배 수준에 해당한다.

〈표 9〉 증권거래세와 위탁매매수수료율 비교

구분	주식거래대금 (유가+코스닥)	증권거래세 (농특세 포함)	위탁매매 거래액(a)	위탁매매 수수료(b)	위탁매매 수수료율(b / a)
2010년	1,893 조원	5.6 조원	2,741 조원	3.3 조원	0.1184%
2011년	2,260 조원	6.6 조원	3,524 조원	3.4 조원	0.0963%
2012년	1,724 조원	5.0 조원	2,431 조원	2.3 조원	0.0929%
2013년	1,436 조원	4.3 조원	2,212 조원	2.1 조원	0.0954%
2014년	1,459 조원	4.4 조원	2,941 조원	2.8 조원	0.0940%
2015년	2,201 조원	6.6 조원	4,408 조원	3.9 조원	0.0884%
2016년	1,940 조원	5.7 조원	3,923 조원	3.1 조원	0.0792%
2017년		6.3 조원		3.4 조원	

* 출처 : 금융투자협회

따라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시 증권거래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개인·법인·외국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신고·납부 시, 증권거래세를 손금불산입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른 세목인 증권거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세법과세체계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다른 세목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취급하고 있고,³⁵⁾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중과세의 완화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어렵지 않

35)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을 것이다.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①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면과세 확대, ②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확대, ③ 증권거래세 확대+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권거래세의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에 비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 상황으로 볼 때 증권거래세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추세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식투자과세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던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것을 비추어 볼 때에도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근거는 세수확보 이외에는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3. 양도소득세 확대정책의 체계적 정합성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자 확대, 과세범위 확대, 세율인상 등³⁶⁾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향후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된다면 세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확대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양도손실 과세이연,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는 미흡한 편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양도손실에 대한 공제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소득 간, 기간 간 조세중립성 또는 조세형평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과세소득 유형변경, 손실이연 등 조세회피 우려로 인해 양도손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비대칭적 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과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각의 그룹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다양한 지표에 따라 10~30%로 서로 다르게 과세되는 데 비해, 파생상품은 현재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으로서 주식선물, 옵션 등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대체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정책목적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주식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주식과 다른 과세취급의 타당성

36)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관련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과표에 따른 세율인상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도차익은 과세되는 반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만 공제되어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의 과세취급이 비대칭적이다. 현재 세제에서는 전체 투자기간 차원에서의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및 동일한 세율 적용, ② 주식 등 양도손실의 이월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수평적 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미국은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손익을 통산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손익만을 통산할 것인지, 주식과 주식 이외의 파생상품, 예를 들어 해외파생상품 손익과도 통산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에 대한 세율과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세율로 통합할 것인지 파생상품에 대한 세율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고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손실은 즉시 실현하고 이익은 이연하는 절세계획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이 대체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다르게 과세하고자 하더라도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구분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두 번째,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주식 등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주식 뿐만 아니라 상품 간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주식의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중장기적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소득은 상장여부, 지분율 및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10~30%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비해, 주식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미만시 14%의 세율로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시 투자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최고 42%로 과세됨으로써 소득종류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 이외의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차익(capital gain)을 포함하고 있는 ELS, 펀드 등 환매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아, ELS 등 배당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양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ELS 등 투자손실도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10〉 투자자별 주식투자 과세체계 현황

구 분		개인	법인	비거주자
증권거래세		상장주식 : 0.3%, 비상장주식 : 0.5%		
소득과세	양도소득	원칙 과세(10~30%), 다만,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법인세 과세 (10~25% 누진세율)	거주지국(본국) 과세
	배당소득	14% 원천징수, 다만, 이자소득과 합산하 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 소득종합과세(6~42% 누 진세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과세

이자,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금융상품소득의 경제적 실질이 양도손익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예전부터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2009년 이후 금융소득을 다른 일반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 금융소득과 세 일원화를 통해 금융소득의 세율을 통일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 국제적 이동성, 세제의 단순성을 통한 수평적공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높고 국제적 이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조세로 인한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축소 등과 병행하여 도입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이다. 다만,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득간 통합과세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법적 형식은 유지하더라도 소득 및 손실통산, 동일세율 적용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추구하여야 한다.

V. 결 론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의 낮은 담세능력과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세 확대에 의한 경제적 이중과세 부담, 해외금융시장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높은 점은 세제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모두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가지 세목 중 한 가지만 과세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양도손실 과세이연,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새로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수평적 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등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8. 「2018 국세통계연보」.
- 금융연구원. 2013.2. “EU 11개국 금융거래세 도입 배경과 향후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제22권 제6호 : 18
- 금융위원회. 2019.3.21.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보도자료.
- 김수성 · 최원석. 2015.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한국세무학회.
- 김현동. 2017.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세무학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 박 민. 1999. “이중과세의 유형과 그 구제책”.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 89
- 박은태. 2011. 「경제학사전」. 경연사.
- 오 윤 · 문성훈. 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조세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 80-81
- 오 윤 · 임동원. 2013.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 7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104
- 홍범교 · 이상엽. 2013.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홍범교 · 이상엽. 2012.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6.4.12.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Letter from Mr Sven Sester, Minister of Finance, Republic of Estonia*”.
- Dick K. Nanto. 2000. *Japan's Landmark Financial Deregulation :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 European Commission. 2011.9.28.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system of FTT*” : 17
- Gunther Capelle-Blancard · Olena Havrylchyk. 2013. *The Impact of the French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Liquidity and Volatility*. Documents de travail du Centre d'Economie de la Sorbonne 2013.85 : 30
- Japan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2010. *Fact Book 2010*.
- OECD. 2006. *Reforming Personal Income Tax*, OECD Observer : 1
- Shigeki MORINOBU. 2004. *Capital Income Taxation and the Dual Income Tax*. PRI Discussion Paper Series (No.04A-17).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 4
- S.R. Umlauf. 1993. Transaction Taxes and the Behavior of the Swedish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 : 227-240

Stephan Schulmeister, Margit Schratzenstaller, Oliver Picek. 2008. *A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 Tax—Motives, Revenues, Feasibility and Effects*. WIFO : 22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A Study on Improvement of Stock Investment Tax System

Moon, Seong-hoon* · Lim, Dong-won**

〈Abstract〉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has been taxed without changing the tax rate since 1996, while the taxable scope of the Capital Gains Tax continues to expand, and there is a growing debate that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STT”) should be abolished or lowered. If the transferer actually pays both the STT and the Capital Gains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CGT”) on the same stock transaction, it could be economic double taxation. In addition, despite the expansion policy of the CGT, there are insufficient tax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Accumulated income for the same type and tax rate structure.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because the tax neutrality caused by discrimination taxation by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income is undermined.

Firs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policy direction to reduce the weight of the STT or to abolish and to increase the CGT it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STT is more tax revenue-oriented than the purpose of introduction, and it may undermine the efficiency and tax equity of the capital market. If the taxable scope of the CGT is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abolish or cut the STT. Second,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GT, the Tax Neutrality between income of stocks and stock-related derivatives should be improved through profit and loss between stocks and stock-related derivatives and the same tax rate. In order to resolve the tax inequalities between investment periods, it is necessary to allow a carryover deduction, such as carrying forward a deduction for a certain period on the loss of the transfer of shares. Third, in the mid- to long-term, Korea should also consider introducing a tax reform, that is a Dual Income Tax System, which expands the scope of income taxation on financial products, while also reducing the tax rate and operating profit and loss.

〈Key words〉 Stock investment tax, Economic double taxation, Tax neutrality, Dual income tax system

*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oncta@hallym.ac.kr, First Author.

** Research Fellow,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resh91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